

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98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2. 1. 28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삭제(별표 3)

3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사항 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성별영향 평가: 개선사항 없음(여성가족과-3681호, 2022. 1. 25)

라. 입법예고: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

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동장, 의회사무국장”을 “동장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별표2,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3과”를 “별표2와”로 한다.
별표3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, <u>동장</u>, <u>의회사무국</u>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,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 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 <u>동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 (위임사항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<u>별표1</u>,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<u>별표2</u>, <u>의회사무국</u>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<u>별표3</u>과 같다.</p>	<p>제2조 (위임사항)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별표2</u>와 ----- -----.</p>

근거법규

□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4호
 -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전부 개정예 따라 구청장이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삭제하는 것으로
- 조례 개정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

3. 작성자

- 소 속: 기획예산실
- 직 급: 지방행정주사보
- 성 명: 여 영현
- 연 락 처: 052-290-3142

<참고자료>

[별표 3]

【현 행】

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

실과	위임사무명	근거법령	비고
행정지원과	1. 의회사무국 직원 중 별정직·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·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	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	

【개정안】

<삭제>